# 11. 환경조형예술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장소) 본 연구소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환경조형예술연구소(이하 연구소라 한다)라 하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물질 문명사회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 개성 개발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환경조형예술의 가치를 증진하고, 환경과 조형예술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발전과 세계 속의 한국 환경조형예술을 선양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환경조형예술 조사 및 연구
2. 학술연구발표, 작품전시회, 국내외 저명학자 초빙강연회, 공모전 개최
3. 연구자료 수집,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
4. 환경조형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
5. 환경조형물(조형물, 조경) 설계, 제작, 설치
6. 외부 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탁
7. 기타 환경조형예술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2장 조 직

제4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교내·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부소장) ① 연구소에 부소장을 2명(외부1명,내부1명)을 두며, 부소장은 소장에 준하여 연구소를 대표하며, 소장의 위임 하에 연구소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.

② 부소장은 교내·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(이하 단장이라 한다.)이 위촉한다.

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원·자문위원) ①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급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소관분야 전문가
2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소관분야 전문가
3. 연구원 :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소관분야 전문가

4. 각급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5. 연구소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연구교수) ① 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소관분야 전공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객원연구원) ① 소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우수한 국내·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1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박사 후 연구과정) 소장은 국내·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제11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 후 연구 과정 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제11조(감사)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를 두며, 감사는 각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 감사를 수행한다.
② 감사는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1조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12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10명 이내(학과교수 포함)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객원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과정 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## 제4장 재정

제15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.

1. 대학의 보조금(대학, 정부기관, 관련단체)
2.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
3. 연구 과제 수탁으로 발생하는 재원
4. 기타수입(연구원 이상의 연회비)

제16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7조(장부 및 물품관리)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② 소장은 연구소 내의 제반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보칙

제18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19조(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을 정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